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달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4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

발의의원 : 신달호 의원,

박주용 의원, 이연숙 의원

1. 제안이유

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관련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. 이에 화재 뿐만 아니라 침수 등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해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6조제4항)

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(붙임)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공동주택으로 한다. 다만,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은 제외하되,” 를 “공동주택(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은 제외한다)으로 한다. 다만,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화재, 침수, 그 밖의 재난 등의 발생위험의 상존, 그 발생 시 피해 범위의 광범성, 그 발생 예방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추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특례)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건에도 적용한다.

제3조(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준비행위) 군수는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2조 적용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안건을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하게 할 수 있다.

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참고**상위 및 관계법령** (발췌)**□ 「공동주택관리법(법률)」(2024.3.19. 타법개정, 2025.1.1. 시행)**

제85조(관리비용 등의 지원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,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·진단에 필요한 비용(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·운영 비용을 포함한다)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재난 발생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원대상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경우 보조금 지원에서 비용 발생이 예상됨(안 제16조제4항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(제3조제2항제1호·2호)

3. 미첨부 사유

-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 선정을 달성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므로, 공동주택의 수요 및 선정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. 또한, 이 경우 추가적인 지원으로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(안 제16조제4항)

작 성 자

소 속 및 직 위

달성군의회 의원

성 명 (연 락 처)

신 달 호 (☎ 2049)